

친환경농산물 자조금

납부 안내



2016년 7월 1일부터
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
친환경농산물 자조금제도*가 시행됩니다.

*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(총 조성액의 50%이내)을 활용하여
친환경농업인 등이 스스로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, 수급안정,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
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·유통·가공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

친환경농산물 자조금

- | **시행일** | 2016년 7월 1일
- | **참여대상** | 1천㎡이상 유기·무농약인증 농업인(농업법인 포함), 친환경농산물 취급 조합
*1천㎡미만 유기·무농약인증 농업인도 희망할 경우 참여 가능
- | **참여방법** | 인증신청시 농가거출금 납부를 통해 자조금사업 참여
- | **납부기준** | 매년 1회, 면적(㎡)당 유기 논 4원, 밭 5원, 무농약 논 3원, 밭 4원 납부
 - 감면기준 : 임산물(밤, 산양삼 등)을 포함한 밭의 경우 50,000㎡,
논의 경우 100,000㎡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
 - 경감기준 : 50,000㎡ 초과 100,000㎡이하 논 면적에 대해 기준의 50% 적용
- | **납부방법** | 인증신청시 인증기관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함)에 납부



친환경농업인이라면 누구든지
친환경농산물 자조금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
인증신청시 농가거출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